

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744

제출일자 : 2002. 3. 14.

제출자 : 고 성 군 수

1. 제안이유

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인 규제심의기구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·관 공동위원장을 구성코자 함

2. 주요골자

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초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공무원 1인과 민간인 1인으로 민·관 공동위원장을 두고, 부위원장 제도는 폐지하고, 실과 소속공무원 중 위원 임명사항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3조).

3. 관련근거

○ 타시군 입법례 비교표

○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및 제25조 관련법 발췌문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중 위원회는 “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”를 “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”로 하고,

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위원장은 부군수와,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

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기획감사실장, 지역경제과장, 환경녹지과장, 도시과장으로 한다.

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②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</p> <p>① 위원회는 <u>위원장과 부위원장</u>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</p> <p>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<u>소속 공무원 실·과장</u>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</p> <p>④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</p> <p>① ----- <u>위원장 2인</u> ----- -----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군수와,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<u>기획 감사실장, 지역경제과장, 환경녹지과장, 도시과장</u>으로 한다.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임무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4조(임무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